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8일,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14.)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 및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농어가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된 경지면적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

협사업자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안 제2조의2)

박수현의원안에서 그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16개 중 15개의 수립 주기가 5년(1건은 미정)이고 타 부처 소관 법률에서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일부¹⁾ 존재함.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에서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박수현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 기준 도입(제9조제2항 신설)

먼저,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각각 ‘예측 불가능한 재해’,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 적용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공통적으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허용하고,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역시 할증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기본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은 할증 적용 금지 대상으로 각각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에 따른 피해를 규정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사실상 모두 불가항력적이고 보험 가입 시점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한 할증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보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합계’가 커지게 되어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됨.

또한,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재해위험도가 증가하여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험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²⁾을 운영 중이며, 재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사인 국가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재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실을 보상³⁾해주

2)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 있으므로 보험료 할증 제한으로 재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해보험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보험기금을 충당하는 국가 재원의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재 농식품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수가 1,000건 이상임.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평가사의 교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한 손해평가를 담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르면

3) 재해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국가가 본사업의 54~94%, 시범사업의 96~99% 인수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기존 손해평가사 등은 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존 담당 손해평가사 등의 의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